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외교통일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4년 6월 28일, 박충권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7일)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년 11월 8일)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2024년 11월 13일)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 의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기 위해 올해부터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이를 위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지정되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하면 규정이 아닌 법률을 통해 직접 기념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률의 최초 시행일인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의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4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사우)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기념일 지정 근거를 두려는 것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기념일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고 관련 행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성공사례를 널리 알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으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른 정부기념일의 입법 형식 등을 살펴 볼 때 이를 대통령령에 규정할 것인지 법률에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것으로 판단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김건)

윤후덕의원, 박충권의원, 김건·홍기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